# 2022년도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2. 4. 21.(목),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하병현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5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b>의결안건〉</b>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 Ⅱ.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58건(안건번호 제2022-23455호~2421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23455호~23469호는 웹하드에 출판물의 불법 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 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23470호~23472호는 카페 및 블로그에서 방송의 일부를 이용 중인 사안으로 방송의 출연자인 게시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인 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23472호~2421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게임, 만화, 음악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3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215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여부(안건번호 제2022-11510호~12724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에 접속할 수 있는 1,215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2-5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 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 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15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2-23455호~24212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3455 호~23469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불법 복제한 만화 등을 게시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2-2346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웹하드에서 '■ ■■■ ■ ■'이라는 만화출판물의 정식 한국어판을 불법복제하여 제공하고 있음. 해당 건을 포함하여, 안건번호 제2022-23455호~23469호의 18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23455 호~2346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동의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3455 호~2346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3470호~2347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상하여 요청한사안으로, 융융융 블로그 및 융융융 카페를 통하여 방송 '⑩⑪ ⑩⑪⑪⑪ ⑪'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전송하고 있는 사안임. 게시자는 해당 방

송의 출연자이며, 본인의 출연분을 일부 또는 전부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제2022-2347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게시자가 직접 운영하는 융융융 카페에 30분 분량의 영상, 즉 원저작물 방송분의 약 2분의 1 가량을 게시하고 있음. 영상 재생을 통해 출연자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했을 때 게시자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음.

(안건번호 제2022-23471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게시자가 직접 운영하는 육육육 블로그에 원저작물 방송의 전체 분량을 게시하고 있음. 역시나 영상 재생을 통해 출연자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했을 때 게시자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살펴보았을 때, 방송의 출연자인 게시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인 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23470 호~2347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동의 함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3470 호~23471호는 이용허락의 가능성이 있는 점,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2-23472호~2421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복제한 영상물,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중점](영화)코다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3552호는 웹하드에서 '[중점](영화)코다 (2021)'를 150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1. 8. 31. 개봉한 해외 영화로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2,500원에 서비스 중임.

(만화 '[중점](만화)아르테 (출판 : 대원씨아이) (2022) [긴급]'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4006호는 웹하드에서 '[중점](만화)아르테 (출판 : 대원씨아이) (2022) [긴급]'를 60포인트에 판매중임. 2013. 12. 부터 연재 중인 일본 만화로 현재 리디북스에서 3,000원에 판매중임.

(게임 '[중점](게임)하우스 플리퍼 House Flipper (2018)'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24103호는 웹하드에서 '[중점](게임)하우스 플리퍼 House Flipper (2018)'를 470포인트에 판매 중임. 2018. 5. 17. 출시한 한국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스팀에서 20,500원에 판매 중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 건번호 제2022-23472호~2421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건번호 제2022-23472호~2421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를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3472호~24212호 중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23455호~23469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2-23470호~23471호는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2-23472호~24212호는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1510호~12724호에 대하여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 4. 폐회 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28.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하병현